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297호 2021. 4. 26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제한(변경)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1-29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소규모 위험시설 통행제한(변경) 고시

「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통행제한)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(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 통행제한을 변경 고시합니다.

2021. 4. 26.

예 천 군 수

1. 소규모 위험시설 현황

연번	시설명칭		시군구	읍면동	리	지 번		사 업 량(m)		정비 계획	비고
	구 분	명 칭				시 점	종 점	연 장	폭		
1	소교량	독양교	예천군	보문면	독양리	262	786-1	50	5	2022년 교량개체	

2. 통행제한 사유 :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교량의 안전성 확보 및 통행차량의
안전사고 예방

3. 통행제한 기간 : 2021. 4. 26. ~ 교량개체 시까지

4. 통행제한 차량 : 당초 총중량 1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
변경 총중량 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

5. 문의처 :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 (☎054-650-6338)